##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8. 16.>

## <u>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u> <u>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u>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THE TOTAL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명 이상 500명		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미만		사람(같은 표 제3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7호 및 제9호부
가구 제외			터 제12호까지에 해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당하는 사람은 제외
조업			한다)을 선임해야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한다.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명 이상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의약품 제외			사람(같은 표 제7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및 제9호부터 제12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업			사람은 제외한다)을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선임하되, 같은 표
11. 1차 금속 제조업			제1호ㆍ제2호(「국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가기술자격법」에
및 가구 제외			따른 산업안전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기사의 자격을 취득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한 사람은 제외한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다) 또는 제4호에
계 제조업			해당하는 사람이 1
15. 전기장비 제조업			명 이상 포함되어야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한다.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ul> <li>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li> <li>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li> <li>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li> <li>26. 발전업</li> <li>27. 운수 및 창고업</li> </ul>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미만. 다만, 제 37호의 사업(부 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여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다만, 제28호 및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35.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여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 제11호 및 제1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히되, 같은 표 제1호·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 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다)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한다.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
		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 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0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하 되, 같은 표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1,500	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 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 상으로 한다.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기간 중 전· 후 15에 해당 하는 기간은 2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있고, 같은 표 제1호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실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석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지역을 취실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지역을 취실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지역을 취임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기업을 취임하고 어느로 수행 기사의 기업을 취임하고 어느로 수행 기업을 가입니다.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천 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 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전체 공사기간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	해당하는 사람을 선 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 다 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산 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억원 이상 6천 억원 미만 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200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 8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 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5명 이상으 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조	10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은 2명까지만 포함 될 수 있고, 산업안 전지도사등이 3명

1	1	I	1
	원 미만	기간 중 전・후	이상 포함되어야 한
		15에 해당하는	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은 5명 이	기간 중 전・후 15
		상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기간에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는 산업안전지도사
		천억원(2조원	등이 3명 이상 포함
		이상부터는 매	되어야 한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	
		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	
		•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	
		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다) 이상으로 한다.	

## 비고

-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